기업과 인권을 연결하기

Bridg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기초 보고서 시리즈

Foundational papers series

돌봄 및 지원 체계에서의 인권 이행: CRPD 및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기반한 실무 체크리스트

Putting human rights into practice in care and support systems: A practical checklist based on the CRPD and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장애인을 위한 권리 기반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향하여

Towards rights-based care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KOICA Koddi

배경

이 체크리스트는 돌봄 및 지원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 — 국가, 서비스 제공자, 노동자, 이용자 — 가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의 원칙과 지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실무 도구이다. 이는 **장애포괄적 인적지원 제공의 평등과 품질(EQUIP) 프로젝트** 하에 OHCHR이 개발한 기초 보고서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한 해야 할 것(DO)과 하지 말아야 할 것(DON'T)을 제시한다.

EQUIP는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사항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법적·규범적 틀, 그리고 장애인 권리 실현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
- 실무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해 왔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종 상호 연계되고 상호 강화하는 구조적, 체계적, 정책적, 문화적 사안;
- 위치와 맥락에 관계없이, 인권 관련 위험의 다양한 원인을 더 잘 식별하고 분석하며, 식별된 위험을 완화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아래에 제시된 **체크리스트**는 EQUIP 프로젝트 기초 보고서 시리즈로부터 도출되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의도로 한다. 이 시리즈는 소개 글과 다섯 편의 기초 보고서를 포함한다.

상자 1:

EQUIP 프로젝트 기초 보고서 시리즈

이 기초 보고서 시리즈에는 소개 글과 다섯 편의 기초 보고서가 포함되며, 함께 읽을 때 더 큰 도움이 된다:

기초 보고서 시리즈 소개: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소개 글
기초 보고서 제1호: 규제자이자 구매자로서의 국가
기초 보고서 제2호: 이용자 주체성과 돌봄 및 지원 서비스의 민주화
기초 보고서 제3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인권 위험
기초 보고서 제4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부문의 인권 실사와 구제
기초 보고서 제5호: 돌봄 및 지원 분야를 위한 "스마트 믹스" 조치

이 체크리스트는 모든 맥락에서의 사안을 포괄적으로 나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서 긍정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 추가적인 탐구와 옹호 활동에 영감을 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틀로서 고안되었다.

이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것

-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과 관행을 안내하는 것;
- 현행 체계의 공백과 위험을 식별하는 것;
- 이해관계자를 위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뒷받침하는 것; 그리고
- 모든 수준에서의 책무성과 참여를 증진하는 것.

설명 참고: 아래의 체크리스트에는, 독자가 시리즈의 각 핵심 메시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지침을 찾을 수 있는 기초 보고서의 관련 절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열은 관련 기초 보고서와 절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FP1 다섯"은 관련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가 기초 보고서 제1호, 섹션 다섯에 있음을 나타낸다.

EQUIP 프로젝트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이니셔티브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본 번역본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원문(영문)과 번역문 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웹사이트에 게재된 영문 원문이 우선합니다.

원문 경로: OHCHR 홈페이지 > Documents > Tools and Resources > Equality and Quality in Disability-Inclusive Human Support Provision (EQUIP): Foundational Papers and Checklist

국가 및 정부를 위한 지침			
출처: **FP + 핵심 요지**	**해야 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출처:** **FP + 핵심 요지**
FP1 하나 FP1 둘	장애인을 위한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형성하는 인권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이는 명확한 규제, 재정 지원 출처, 질적 기준, 책무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장애인을 위한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서 열악한 질적 기준과 책무성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전면적인 방임적 접근이나 규제 완화 접근을 채택하지 **말 것.**	FP 소개 다섯 FP 소개 일곱 FP1 하나 FP4 하나
FP1 셋	CRPD의 목표와 원칙과의 부합성이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 또는 돌봄 및 지원 서비스의 제공이나 감독이 위탁된 기관에 대한) 모든 규제 설계와 성과 검토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보장**할 것.**	특히 제공자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국가로부터 상당한 공공 재정이나 사업을 받는 경우, 인허가, 점검, 계약상의 서류 작업, 또는 행정적 준수를 인권 실사의 대체물로 삼지 **말 것.**	FP1 둘
FP1 셋	국가로부터 상당한 사업이나 재정을 받는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의사결정의 전제 조건으로서 그리고 향후 관계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수행**할 것.**	특히 제공자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국가로부터 상당한 공공 재정이나 사업을 받는 경우, 인허가, 점검, 계약상의 서류 작업, 또는 행정적 준수를 인권 실사의 대체물로 삼지 **말 것.**	FP1 둘

국가 및 정부를 위한 지침			
출처: **FP + 핵심 요지**	**해야 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출처:** **FP + 핵심 요지**
FP1 둘	권리 기반 돌봄 및 지원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 — 개별화된 계획 수립,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 접근성, 책무성 체계 — 가 질적 기준과 서비스 정의의 일환으로 명확히 규정되도록 보장**할 것.**	서류 작업, 시설 규정, 또는 인력 배치 비율과 같은 행정적 또는 운영적 요건을 질의 대리 지표로 취급하거나, 이것이 실제로 권리 기반 돌봄 및 지원을 반영한다고 가정하지 **말 것.**	FP1 둘
FP1 둘	CRPD의 목표와 원칙에 명확히 부합하고 이를 참조하는, 측정 가능한 서비스 질 지표의 창출과 개발에 투자**할 것.**	입소율, 병상 수, 인력 배치 비율, 또는 준수 체크리스트와 같이 쉽게 **측정 가능**하거나 절차적인 지표를, CRPD에 부합하고 사람들의 실제 질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권리 기반 성과 지표의 대체물로 삼지 **말 것.**	FP1 셋
FP1 둘	방임, 강압, 또는 심리사회적 피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탐지하는 방법으로서 점검과 절차적 감사가 갖는 한계를 인지**할 것.**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책무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투명성, 기록 보관, 정보 공개 요건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말 것.**	FP1 둘

국가 및 정부를 위한 지침			
출처: **FP + 핵심 요지**	**해야 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출처:** **FP + 핵심 요지**
FP1 둘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규제 기관 및 법 집행 주체가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갖추고, 학대 의혹 사건을 형사 기소로 회부하기 위한 명확하고 적절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보장**할 것.**	점검, 감사, 또는 절차적 체크리스트의 준수가 이용자의 생생한 경험이나 방임, 강압, 심리사회적 피해로부터의 안전장치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한다고 가정하지 **말 것.**	FP1 둘
FP1 둘	보건, 노동, 평등 및 인권 기관 등 사람 돌봄 및 지원 제공과 관련된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 간의 적절하고 능동적인 협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제, 재정 지원, 점검, 또는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이 기관들 사이에 방치되거나, 중복되거나, CRPD의 목표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을 때와 같이, 기관 간의 공백, 중복, 또는 불일치가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거나 감독을 약화시키도록 허용하지 **말 것.**	FP1 둘
FP1 둘 FP2 여섯 FP5 일곱	예를 들어 관련 규제 및 모니터링 기구, 그리고 점검 및 감사 팀에 장애인의 적절한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법률 및 정책 개발과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견고한 체계를 마련**할 것.**	장애인과 그 대표 조직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 규제, 모니터링, 또는 감독 체계를 설계하거나 이행하지 말 것, 또는 성별, 연령, 이주 지위와 같은 교차적 요인이 실제로 불이익을 가중시키고 이용자의 목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간과하지 **말 것.**	FP1 둘

국가 및 정부를 위한 지침			
출처: **FP + 핵심 요지**	**해야 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출처:** **FP + 핵심 요지**
FP1 다섯 FP2 일곱	예를 들어 공동설계를 규제 체계, 재정 지원 기준, 조직 관행에 내재화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원이 계획되고, 제공되고, 검토되는 방식을 의미 있게 형성할 수 있도록, 이용자 주도형 서비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고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경직된 서비스 범주, 규정적인 자격 규칙, 서류 작업 부담, 또는 전문가의 문지기 역할이 이용자 주도성을 제한하거나 장애인이 공동설계에 의미 있게 관여하는 것을 막도록 허용하지 **말 것.**	FP1 둘 FP2 넷
FP1 셋	CRPD 및 그 밖의 관련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기준, 원칙, 목표에 잘 부합하지 않는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하여, 사람들이 적절한 기관(예: 규제 기구나 국가인권기구)에 민원과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있도록 보장**할 것.**	절차적 장애물을 통해서든, 또는 이용자의 우려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못함으로써든, 민원 체계가 이용자를 침묵시키거나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허용하지 **말 것.**	FP1 셋
FP1 넷	국가–기업 간 연계의 여러 측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위험을 인식하고 다루며, 이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가 마련되도록 보장**할 것.**	재정 지원, 구매, 또는 감독 체계가, 제공자의 재정적 또는 제도적 이해관계가 규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 기반 기준을 집행할 국가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내도록 허용하지 **말 것.**	FP1 넷

국가 및 정부를 위한 지침			
출처: **FP + 핵심 요지**	**해야 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출처:** **FP + 핵심 요지**
FP5 셋 FP5 다섯	일관된 "스마트 믹스" 조치를 개발하는 일환으로, 돌봄 및 지원 부문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제공자가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법률, 규제의 전체 범위를 식별하고 고려**할 것.**	돌봄 및 지원 부문을 더 넓은 정책 영역으로부터 고립된 채로 규제하거나, 전략적 인센티브와 갱신된 서사를 활용하지 못하지 **말 것.** 이는 것은 공백, 상충하는 의무, 고착화된 관행을 만들어내어 권리를 존중하는 "스마트 믹스" 조치를 저해한다.	FP5 넷 FP5 여섯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침			
출처: **FP + 핵심 요지**	**해야 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출처:** **FP + 핵심 요지**
FP 소개 다섯 FP3 셋 FP4 전체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인권 위험을 식별하고 다루기 위한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제시된 틀을 활용하여 인권 실사를 수행**할 것.**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관행과 접근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위험을 간과하지 **말 것.**	FP 3 전체
FP 소개 일곱	운영 맥락과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 방식을 식별하고 이행하기 위한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한 자신의 노력을 입증할 준비를 갖**출 것.**	인권 위험을 다루는 데 있어 임시방편에 의존하지 말 것. 실제적이거나 임박한 피해를 다루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긴급 조치와 더불어, 변혁적 변화를 이끄는 장기적 전략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 것.**	FP 소개 일곱
FP4 다섯	인권 위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심각한 것으로 두드러지거나 대응이 지연될 경우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는 인권 위험을 우선시**할 것.**	인권 위험을 다루는 데 있어 임시방편에 의존하지 **말 것.** 실제적이거나 임박한 피해를 다루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긴급 조치와 더불어, 변혁적 변화를 이끄는 장기적 전략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 것.**	FP4 다섯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침			
출처: **FP + 핵심 요지**	**해야 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출처:** **FP + 핵심 요지**
FP4 여섯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서 인권 기준을 증진하기 위해, 부처, 규제 기구, 사용자 협회, 전문가 집단 등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할 것.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CRPD에 부합하는 정책을 옹호하며, 책무성과 포용을 강화하는 조치를 조율**할 것.**	고립된 채로 일하거나 이해관계자 및 부처와의 협력을 소홀히 하지 말 것. 인권 성과 개선을 위한 조율된 노력을 저해하는 사일로를 만들지 **말 것.**	FP4 여섯
FP2 둘 FP2 여섯	서비스가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과 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에 관하여, 그리고 서비스가 설계되고 제공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긴밀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	기관, 서비스, 절차를 설계할 때 행정적 통제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을 적용하여, 생생한 경험으로부터의 통찰을 소홀히 하지 **말 것.**	FP2 둘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침			
출처: **FP + 핵심 요지**	**해야 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출처:** **FP + 핵심 요지**
FP2 둘 FP2 넷 FP2 다섯	장애인이 서비스 설계 및 제공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을 식별하고 제거할 것. 절차가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이도록 보장**할 것.**	불참을 승인이나 동의로 오인하지 말 것. 사회 내 권력 불균형과 기존 위계가 참여의 장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간과하지 **말 것.**	FP2 둘 FP2 넷 FP2 다섯
FP4 여덟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규정된 효과성 기준을 충족하고, 사람들이 접근하고 관여하기 쉬운, 현장 및 제공자 차원의 고충처리 체계와 절차를 마련**할 것.**	특히 보복이나 서비스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실제로 장애인이 고충처리 체계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구조적·실질적 과제를 간과하지 **말 것.**	FP4 여덟 FP4 아홉
FP4 아홉 FP4 열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마련되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온전한 참여와 함께 개발되도록 보장할 것.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설계하고,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정의하며,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데 관여시**킬 것.**	어떠한 상황에서든 가장 효과적인 구제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정하지 **말 것.**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온전하고 능동적인 참여 없이 설계된 구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잊지 **말 것.**	FP4 아홉 FP4 열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관련 옹호 단체 및 네트워크를 위한 지침			
출처: **FP + 핵심 요지**	**해야 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출처:** **FP + 핵심 요지**
FP 소개 셋 FP2 하나	CRPD 및 국내법상 자신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이**끌 것.**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시설 생활을 강요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이지 **말 것.**	FP 소개 둘 FP2 넷
FP1 둘 FP5 셋	투명성을 요구하고, 서비스 기준, 재정 지원, 성과 지표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요청**할 것.**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조치가 열악한 질이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한다고 가정하지 **말 것.**	FP1 하나 FP3 하나
FP3 다섯 FP4 여덟	내부고발 체계, 그리고 (이용 가능한 경우 독립적이거나 비밀이 보장되는 채널을 포함하여) 기업 기반 고충처리 체계나 관련 규제 기구가 제공하는 민원 체계를 통해서와 같이, 업무 관행과 착취에 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밖의 경로를 인지하고, 나서기를 두려워할 수 있는 동료를 지지**할 것.**	자신의 안전이나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이용자와 같은 타인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말 것. 먼저 신뢰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조언자에게 도움을 구**할 것.**	FP3 다섯
FP4 여덟 FP4 아홉	고충처리 체계나 신뢰할 수 있는 옹호 채널을 통해 방임, 학대, 또는 권리 침해에 관한 우려를 신고**할 것.**	침묵하거나 비공식적인 민원에만 의존하지 **말 것.**	FP4 여덟
FP4 여덟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무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의, 민원, 소통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구두 약속이나 비공식적인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 것.**	FP4 여덟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관련 옹호 단체 및 네트워크를 위한 지침			
출처: **FP + 핵심 요지**	**해야 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출처:** **FP + 핵심 요지**
FP2 여섯 FP2 일곱	집단적 목소리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자문위원회, 또는 장애인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지지**할 것.**	고립된 채로 있거나,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타인과 협력할 기회를 무시하지 **말 것.**	FP2 넷
FP2 여섯 FP5 일곱	적절한 경우 장애인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또는 국가 수준의 정책 논의, 협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활용**할 것.**	서비스가 설계되거나 제공되는 방식에 자신이 발언권이 없다고 가정하지 **말 것** —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협의를 무시하거나 그것이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 것.**	FP2 넷
FP2 여섯 FP3 넷	지역사회 기반 및 이용자 주도형 모델과 같이, 자율성과 포용을 증진하는 서비스를 옹호**할 것.**	형식적인 참여나 선택과 통제를 제한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이지 **말 것.**	FP2 넷
FP2 다섯	온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 편의(예: 쉬운 읽기 자료, 수어 통역, 의사결정 지원)를 요청**할 것.**	접근성 장벽이 자신의 참여를 가로막도록 두지 **말 것.**	FP2 다섯
FP4 여덟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무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의, 민원, 소통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구두 약속이나 비공식적인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 것.**	FP4 여덟

돌봄 및 지원 부문의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자 대표를 위한 지침			
출처: **FP + 핵심 요지**	**해야 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출처:** **FP + 핵심 요지**
FP2 여섯 FP2 다섯	장애인단체 및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제공 및 직장 정책에 관한 공동설계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	노동자의 견해, 생생한 경험, 이용자 의견을 배제하는 하향식 결정에 의존하지 **말 것.**	FP2 여섯 FP2 다섯
FP3 다섯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관하여 조언, 지원, 정보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알 것.**	노동자로서 자신이 착취당하게 된 상황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지 **말 것.** 책임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당신에게 있지 않다.	FP3 다섯
FP2 넷 FP3 셋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한 인력 배치 수준, 합리적인 업무량, 지속적인 권리 기반 교육을 옹호**할 것.**	방임과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나 부적절한 교육을 받아들이지 **말 것.**	FP2 넷 FP3 셋
FP2 다섯 FP3 다섯	CRPD에 부합하는 관행, 의사결정 지원, 인권 위험 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에 참여**할 것.**	인권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인권 향유가 어떤 식으로든 조건부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 것.** 임시방편적인 학습이나 낡은 관행에 의존하지 **말 것.**	FP3 다섯
FP2 다섯 FP3 둘	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위한 합리적 편의(접근 가능한 일정, 보조 기술, 조정된 교육)를 요청하고 활용**할 것**	채용, 고용 유지, 또는 승진을 가로막는 차별적 관행을 받아들이지 **말 것.**	FP2 다섯 FP3 둘

돌봄 및 지원 부문의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자 대표를 위한 지침			
출처: **FP + 핵심 요지**	**해야 할 것 (DO)**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출처:** **FP + 핵심 요지**
FP3 다섯 FP4 여덟	기업 기반 고충처리 체계나 관련 규제 기구가 제공하는 민원 체계를 통해서와 같이, 업무 관행과 착취에 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내부고발 체계와 그 밖의 경로를 인지**할 것.**	침묵하거나, 자신의 안전 또는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타인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말 것.** 비공식적인 민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원 조직과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조언과 지원을 구하며, 적절한 내부고발 또는 민원 체계를 활용할 것.	FP3 다섯 FP4 여덟
FP1 하나 FP4 여덟	책무성과 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민원, 합의에 관한 명확한 기록을 보관**할 것.**	구두 진술이나 문서화되지 않은 관행에 의존하지 **말 것.**	FP1 하나 FP4 여덟
FP3 넷 FP5 일곱	보복 방지 보호, 공정한 임금, 참여를 위한 시간 배정, 고충처리 체계에 대한 접근을 협상하기 위해 노동조합/노동자 대표를 통해 활동**할 것.**	개별 협상만으로 체계적인 문제를 다루려 하지 **말 것.**	FP3 넷 FP5 일곱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Palais des Nations
CH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ephone: +41 (0) 22 917 92 20
Email: ohchr-infodesk@un.org
Website: www.ohchr.org